

5. 건축가의 직능

5.1 직업상의 윤리

건축은 사회의 여러 분야의 관련자들이 모여 협력체제, 때로는 경쟁체제를 이루며 실행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질과 코스트의 합수관계가 생기고 설계자, 건설기술자, 제조업자, 판매관계자간에 무수한 경로의 업무가 복잡하게 얽히며 진행되는 프로세스이다. 뿐만아니라 건축가는 다른 분야 뿐 아니라 같은 건축가 동료와도 경쟁상대에 서게 된다. 어느 직업이고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건축가 모두가 완전무결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공정(公正)을 전제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모든 회원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윤리규약'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주(설계업무 위탁자)에 대한 책임과 임무 준수
- 업무상의 비밀 준수
- 부당한 경쟁행위와 덤핑 방지
- 건축주와 도급업자 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판정
- 동업 건축사 간의 업무상 관계
- 부당한 광고와 허위선전 금지
- 개업 건축사의 겸직금지(일반회사, 국가기

관, 대학교육 등)

-피고용자에 대한 기술 향상 등의 편의 제공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건축가가 실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의 문제일 뿐이어서 바람직한 건축가의 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가는 전통적 문화가치를 이해하며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의하여 왜곡되고 단절된 인간환경을 창조하는 소명감으로 공공의 이익, 건축주와 시공사, 건축산업, 예술성과 기술성(과학적) 획득을 위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 강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에 대한 책임으로서 법과 공공의 안전,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노력,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시민과의 관계와 봉사, 인권존중에 대하여 전문성과 성실성을 지켜야 한다.

-전문직능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책임으로서 자격면허에 관련된 사항과 자신의 작품과 경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행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료에 대한 책임으로 동료 건축가, 협동자, 고용건축가를 위하여 적합한 자연환경, 공정한 보수,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실행 하여야 한다.

5.2 건축가의 직능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문화부산하의 한국예술인총연합회(예총)의 분과단체로 가입하여 주로 건축을 문화예술로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것에 반하여 후자는 건설부로 부터 '건축사'의 자격을 획득한 건축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등록을 마친 건축사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 제도는 영국의 왕립건축가협회(RIBA), 미국의 건축가협회(AIA)처럼 하나의 통합된 직능단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며,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닮고 있다. 각 단체는 국제기구에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와 거의 같은 일본의 경우는 80년대 후반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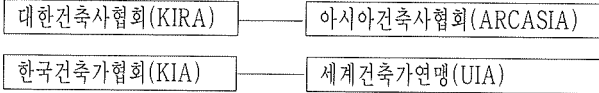
도시환경과 건축문화(4)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黃鏞周/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u

신일본건축가협회(JIA)가 UIA와 ARCASIA에 모두 국가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가. 대한건축사 협회

건축사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건축사법 2조)를 말하며, 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다.(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격변하는 사회상황속에서 도시의 근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건축사협회는 현재 본부와 15개 지부의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있고, 본부는 비상근조직과 상근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지로 「건축사」를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건축사의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사대회」는 크게 내실이 없으며, 건설부등과 연대하여 시행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학생부/신인부/준공건축물부)도 심사방법이나 심사기준의 애매함으로 아직은 협회의 위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협회는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단체임에도 소극적이며 타성적인 운영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라는 명칭은 건축에 관한 창작활동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작가를 의미하므로, 면허를 받아 설계감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보다 그 직능에서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창립된(한국건축)가협회(1959년 개칭)는 '건축가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건축가연맹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문공부(현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 예술단체 총연합회(예총)」에 가입하였고, 1963년 세계건축가 연맹 회원국으로 국제교류를 시작하였다.

가협회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사는 「건축대전(학생과 신인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전과 기성건축가를 위한 초대작가전으로 구성된다)」, 「협회상」시상등을 포함하는 「건축가 축제」이다. 그외에도 건축문화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테마로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관지로 「건축가」지를 월간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문예진흥원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화활동으로서의 장기 정책을 수립하기에 역부족이다.

UIA회원국이지만 국제교류 활동이 미미하여 선진국의 건축가협회에 비하여 위상이 크게 약하며, 「건축대전」의 전시회 역시 타성적인 운영방법때문에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건축가 축제」의 「협회상」도 크게 권위가 없어 전체 건축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조직과 역할의 중복

두단체는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이 서로 중복되어 있고 <표 3-1>, 전국적으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유사한 연구분과기능이 겹쳐 있으므로 <표 3-2> 역할이 분명치 않고, 서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문인력을 낭비하여 실제업무와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표 3-1> 건축 3단체의 회원수와 지회

구분	사협회	가협회	학 회
회원수	4,000명	800명	5,400명
지 회	15	8	8

<표 3-2> 설계관련 두 단체의 연구분과위원회 구성

구 분	사협회	가협회
연구분야	설계·감리 도시설계 환경디자인 구조·시공 전통건축 에너지설비	건축설계 도시환경 실내설계 구조설계 건축역사 건축평론 건축교육
기관지	건축사(월간)	건축가(월간)

라. 건축전람회와 건축상제도

건축가 단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건축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회에 건축가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이해를 돕는 노력에 있다. 도시의 수많은 건축은 흔하게 시민대중에게 노출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건축은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를 통하여 정확하게 건축을 이해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히 기획하여 여는 건축전람회, 건축가전람회는 건축활동(issue)과 가치(value)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건축전람회는 그 속성상 미술전람회와도 다르고 홍보 전시회와도 크게 다르다. 물론 전시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건축전람회는 그 시대의 건축가들의 전시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건축전람회는 그 시대의 건축가들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복돋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기획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 비쳐진 건축이야말로 그 시대에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릇 질 높은 전람회가 그러하듯이 그 속에 담겨질 내용이 사회적 이슈를 담거나 미적, 예술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거나, 혹은 건축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념을 표출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상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상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실은 그 상의 가치가 충분치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害)가 된다. 상은 그 상을 받는자가 명예스럽게 여겨야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치 권위와 명예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수상목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수상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때로는 건축가의 업적에 대하여, 혹은 특정한 작품에 수여하는 건축상은 가능한 한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여 최고의 영예와 권위가 서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국내 건축상 현황
 - 건축가협회상(한국건축가협회)
 - 한국건축문화 대상(건설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
 - 김수근 문화상(공간사)
 - 서울시 건축상(서울특별시)
 - 건축가협회특별상-초평건축상, 아천건축상, 양평학생건축상, 엄덕문 건축상(한국건축가협회)
 - 강구조작품상(대한강구조학회, 포항제철)
- 국외 건축상 현황
 - 프리커상(Pritzker Prize)
 - AIA 골드메달상(AIA Gold Medal Award)
 - 알바 알토상(Alvar Aalto Award)
 - 일본건축학회

마. 새롭게 변하여야 할 건축가 단체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협회와 가협회가 그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인식하고 극대화하여, 서로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하나의 건축사(가)협회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대회」,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같은 외형적인 실적보다 건축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질 높은 설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 건축사 실무에 대한 연구, 개발
- 불합리한 각종 법령, 행정제도의 검토와 개선 제안
- 설계도서의 체계화, 표준화 작업
- 협회의 방만한 조직과 사업에 따르는 문제점 제거(합리적인 기구로 재편성하여)와 같은 실질적 작업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을 문화적 차원에서 인식하면서 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건축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 확실적이며 실적 위주인 「건축대전」운영은 전면 재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 「건축가 축제」를 시민과 사회에 건축문화의 건축가의 역할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기획하여야 한다.
- 세계 속의 한국건축을 지향하며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건축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단체가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적은 무엇보다도 직업상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에 대하여 건축사(가)의 서비스를 한층 향상시키는데 있다. 다수의 건축사(가)는 자격을 인정받고 윤리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면서 회원이 된다. 단순히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명예단체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회원의 권익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명실상부한 조직을 구성

〈자료 1〉 외국 건축가단체의 조직과 기능

- 미국건축가협회(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창립 1857
 - 본부 워싱턴 D.C
 - 회원 5,200명(1993년 현재)
 - (우리나라와 달리 등록건축가 모두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 목적과 기능
 - ①건축가를 돕는 기능
 - .출판-월간지 ARCHITECTURE, AIA 뉴스레터 MEMO
 - .전문적 개발-세미나, 워크숍,오디오테이프 프로그램, 경영/운영기법 개발
 - .AIA 크레딧-이름뒤에 AIA 이니셜 사용
 - .동료 건축가와 교류 모임
 - .건축교육-대학, 학생, 인터쉽의 교육 연계
 - .위원회 활동
 - .AIA 작품상, Gold Medal상, AIA Fellow-ship프로그램
 - .AIA 서점
 - .보험
 - .AIA 카드 서비스
 - ②건축가 사무실을 돕는 기능
 - .건축가 사무소간의 회의
 - .자매사무소 소개
 - .운영, 재무, 경영에 관련된 상담 및 진단
 - .보상, 책임에 대한 보증
 - .성공적인 실무를 위한 정보, 가이드 제공
 - .Architect's Handbook 발행 (1920년 초판 발행)
 - .다양한 표준계약서(contract document)제정 (1993년 제정, 현재 12종)
 -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한 자료 MASTER SYSTEM'S REP발행
 - ③직능을 돕는 기능
 - .건축가의 공공적 위상을 높이는 사업
 - .건축주를 교육시키는 노력
 -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
 - .현재와 미래의 건축가의 직능에 대한 리서치, 건물과 건설사업에 대한 분석(정보, 경향, 예측, 신상품, 고용기회)
 - .직능의 윤리규정 제시, 실시
 - ④ 예비건축가를 돕는 기능
 - .예비건축가에 대한 준회원 제도
 - .AIA/NCARB Intern-Architect Development Program(IDP)이 제정한 기준과 프로그램
 - .건축가 시험에 필요한 handbook출판
 - .AIA 활동에 참여기회 제공
 - .실무개발을 돕기위한 Audio-cassette 프로그램 개발
-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 창립 1834년
 - 본부 런던, UK
 - 회원 28,500명(1990년 현재), 개인 52%, 공공 24%, 외국 17%, 학생 7%
 - 지회 11지회, 80분회
 - 기능 RIBA에 의하여 운영되는 부설 법인 설립(1968-1970)
 - ①RIBA Service Ltd (RIBAS)
 - .계약 사무국, 컴퓨터 서비스, 실무 워크숍
 - .RIBA인테리어 디자인 Selector
 - .RIBA Office Library 서비스
 - .RIBA 기술정보 마이크로화일(RIBAti)
 - .RIBA 제품 Selector
 - .현장 안내판
 - .RIBA 제품 DATA
 - ②National Building Specification Ltd(NBS)
 - .NBS
 - .Standard Method of Measurement(SMM7)
 - .바인더, 워드프로디스켓 'Specification Manager' 발간
 - ③RIBA Publications Ltd
 - .건축, 시공에 관련된 도서 및 실무자료 양식 출판
 - .66개 전용 서점 운영
 - ④RIBA Magazines Ltd
 - .월간 RIBA Journal, RIBA Interiors 발간
 - .Product Information Card(제품정보카드 발간)
 - ⑤RIBA Insurance Agency Ltd
 - ⑥RIBA Indemnity Research Ltd(RIBAIR)
 - ⑦The Architects Benevolent Society
 - ⑧기타특별기구
 - .Architects in Agriculture
 - .Architects in Industry and Surveyors Association(EASA)
 - .Ecclesiastical Architects and Surveyors Association(EASA)
 - .Society of Chief Architects of Local Authorities(SCALA)
 - .Association of Consultant Architects(ACA)
 - .Salaried Architects Group
 - .Women Architects Group
 - .Community Architecture Group

하고 활동하여야 하며,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전문직에 관련하여 회원의 활동과 사무실의 운영을 도와주는 기능(계약, 운영, 재무에 관련된 실무 편람 발간 등)
-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기술정보, 각종자료, 세미나개최 등)
- 건축관련 각종 법제도의 연구개발 기능(법령, 심의 제도 개선과 제안 등)
- 미래의 회원(학생과 예비건축가)의 활동을 후원하는 기능(전시회, 세미나개설 등)

물론 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당수의 유능한 건축사(가)를 포함하는 전문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회원 모두가 적당한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협회활동을 통하여 개인자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면 회비의 징수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5.3 시험과 인력양성

가. 건축가의 신분과 증명

건축가라는 직업은 그 속성상 개인적, 독립적 성격이 강한것이 사실이다.

architect란 칭호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는 건축의 실무를 규제하는 규정이 주마다 달리 정해져 있으며 법률로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은 공중의 보호, 특히 시민의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건축설계 실무를 행하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변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며, 설계감리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 기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나. 건축사 시험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 법제정상의 모순과 운영상의 오류로 인하여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건축사를 적절히 배출하지 못하였다. 제정 당시의 경과조치법으로, 1,500여명의 건축사가 서류전형 만으로 일시에 배출되었고, 1980년 까지는 2급 건축사를 포함하여 연평균 100여명, 1980년 이후에는 특별전형제도로 2급 건축사가 1급 건축사로 전환되었다. 1982년 이후에는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였다.

1984년 이후 응시자 수가 매년 적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약 5%에 불과한 약 200여명의 합격자만이 배출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축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불균형 상태와 사회경제 규모의 확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건축설계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의 개념 정립이 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표 3-3> 연도별 건축사 배출현황

계	'65~'88	'89	'90	'91	'92	'93
6,073명	4,157	277	316	300	258	765

건축사 자격시험이란 실무를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그 수행에 필수적인 설계능

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사 수는 현재 5,490명으로서 이중 4,007명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 건축사 수로 보더라도 인구 12,000명 당 1인의 건축사로서 이는 일본의 인구 2,000명당 1인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사사무소 1개소당 연간 평균 30~40여건의 설계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통계수치를 보여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설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에는 무리이다.

이러한 자격의 희소가치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지 않고 단지 자격의 소유 만으로 경제적인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변질된 인식을 확산시켜 자격의 의미가 전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무경력 5~10년으로서의 실무의 중추를 이루는 건축사보 10,000여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매년 3~5개월간 휴직함으로써 좁게는 건축사사무소, 넓게는 국가 전체에 막대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건축사 시험은 다른 시험제도와는 달리 1, 2차 시험중 1차 시험의 합격을 당해년도 밖에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손실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축행위에 관한 자격시험에 관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예처럼 학교 졸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프랑스, 독일 등의 예처럼 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하고 바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프랑스),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 후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독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건축학교의 교육이 곧 설계 분야로의 진출을 충분히 대비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교육을 받은 졸업생중 설계분야로의 의지를 가진 자가 일정기간의 실무경력 후 시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건축사 면허 자격시험은 설계 실무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되어야 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기시험의 영구합격을 인정하며, 기본적 지식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여 시험자재가 그 목적이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설계조직에서 건축설계의 실무를 실제로 경험한 수험자가 건축사시험에 다수 합격하는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다. 건축가의 양성

건축가로서 설계실무를 시작하는 준비는 전문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능한 건축가의 지도하에 일정기간의 수업경험(intern-ship)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드문 일이지만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건축설계조직에서 설계와 감리 업무를 포함한 업무의 실무경험을 쌓게 되는데 입소초기에는 드레프트 맨(draftman)으로 시작하여 차츰 업무를 익히면서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건축가로 독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구조나 설비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엔지니어로 장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업기간은 대체로 26세전후에 시작하여 대개 3~5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실무경험은 건축사시험준비와도 관련이 있다.

-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모형제작
- 실시설계도의 작성(구조, 설비포함)
- 시방서의 작성
- 상세도의 작성
- 현장 공사감리

기본설계도와 모형제작은 대학교육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시설계도의 작성은 비로소 설계사무소의 실무를 통하여야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며 이 일을 해 내기 위하여서는 건축재료와 시공방법, 설비와 구조에 대한 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방서를 작성한다든지, 현장에서 건축이 완성되는 과정을 감리업무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경험을 쌓는 기회는 사무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건축가 단체에서 예비건축가의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장차의 인력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건축설계조직

건축설계 조직은 흔히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대규모와 중·소규모, 혹은 개인조직과 협동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개 건축가와 직원(디자이너, 엔지니어, 일반업무스텝)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2 혹은 그이상의 사무소가 협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획, 구조, 설비, 조경 등의 전문조직과 협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의 건축사법에서는 등록된 건축사의 숫자에 따라 종합/단독사무소로 나누어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건축사 자격에 구분이 없는 한 이 제도는 잘못된 경우이며,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일은 비합리적이고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환경을 부응하는 설계조직은 오히려 전문성이 강하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전문조직이 협동하는 방법이다.

건축사사무소제도는 그 구성원과 업무 범위에 따라

<표 3-4> 외국의 건축사시험 제도와 등록제도 / 대한 건축사협회 자료

국가	건축사시험제도	등록제도
미국	-시험: 각 주별로 제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예비시험(구조, 시공 등)과 본시험 계획 등으로 나뉨 -응시: 대학졸업후 3~4년 -자격: 실무경력 필요 -시험기관: NCARB(National Committee of Architect Registration Board)	주정부에 건축가로 등록
독일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대학과정(6년~10년)후 2년간 실무수습을 받고 추천서등을 갖추어 건축가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에서 건축가로서의 자격판단	건축가협회에 등록
프랑스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5년간의 까다로운 대학(직업교육 성격)과정을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DPLG(공인건축가 자격증)을 받게된다.	건축가협회에 등록
영국	-시험: 1, 2차 시험(학교교육내용)을 통과하면 2년 실무를 거쳐 3차시험(직업적 소양에 관한 논술 및 구두 시험)에 응시 -시험기관: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대영왕립건축가협회에 등록
일본	-건축사는 1급, 2급 및 목조건축사로 나뉨 -시험: 각급별로 다르나,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실시 -응시자격: 각급별로 다르나 1급의 경우 대학 졸업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필요 -시험기관: 건설성 또는 도도부현지정 시험기관	도도부현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

「단독/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되어 있다. <표 3-5 참조>

단독건축사사무소는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대다수가 10인 내외의 건축사보조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무소이다. 한편 24%의 종합건축사사무소(3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도 일부 50~100인의 직원이 있는 대형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소속 건축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무소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당초의 구분의도와는 다른 실정이다.

건축사법 제정(1963)당시 면허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시 건축행정서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사법 3차 개정(1982)을 통하여 건축직 공무원에게 특별전형 시험제도를 실시한 반면에, 설계사무소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험제도로 인하여 지난 30년간 설계경력이 있는 건축사가 많이 배출되지 못 하였다.

<표3-6>, <표3-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사와 사무소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량이 많아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200만명으로 볼 때 건축사는 5,490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건축사수는 130명으로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적다.

6.1 업무활동

미국의 일반적 건축조직은 크게 영업부문과 비영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다.³²⁾

비영업 부분은 투자관리, 재무관리, 법률관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영업부문의 업무활동을 다시 (1) 개척사업, (2) 설계사업, (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야로 나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업무와 공사감리 업무인데 설계업무는 기획업무,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방서작성 등이고,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계약, 검사, 시공도 검토, 변경사항의 처리, 승인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administration)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아직은 비영업 분야중 법률관계나 기술적인 자료에 의한 실시설계, 시방서작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미약하게 보이므로 국제개방에 대비하여 착실한 준비가

<표 3-5>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현황(1994.1.현재)/대한건축사협회 자료

구분	인원	사무소수	회원
단독사무소	1	2,039	2,039
	2	90	180
	3	11	35
	소 계	2,140	2,254
	종합사무소	3	483
합 계	4	138	540
	5	54	270
	6	10	60
	7	4	28
	8	1	8
	9	2	18
	소 계	692	2,313
광역사무소	소 계	14	17
합 계		2,846	4,584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무소 직원의 숫자와 기구의 규모에 따라 다소 업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축설계업무는 다른 기술관련용역 조직과는 달리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은 전체 등록사무소수의 몇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단순한 계량적 기준에 의하여 '영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통계에서 보더라도 대규모 설계조직은 이른바 도시설계나 플랜트사업과 같은 대규모 특수사업에 참여하여, 도시에 건설되는 건축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설계조직에 의하여 설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대표격인 건축가가 직접 설계에 관여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대부분 조직의 운영에만 전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가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6.2 규모와 특성

가. 소규모 사무실

외국의 경우에는 조수도 없이 건축가 혼자서 개업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흔하다. 물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개인 사무실의 경우 직원수와 사무실확보규정을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잘못된 경우이다.

대개 3~5인의 직원과 건축가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설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이며 팀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일관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대표인 건축가도 충분히 일에 몰두할 수 있으므로 의외로 좋은 건축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조직이다. 다만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전문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외부의 전문가

〈표 3-6〉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비교표
(일본의 전체 건축사중 1급 건축사의 비율은 17%)

구분	면허소지자	사무소개설자	사무소수	비 고
한국	5,490명	4,584명	2,846개소	94년초 현재
일본	725,000명	127,516명	68,066개소	89년말 현재

〈표 3-7〉 1993년 현재 국가별 건축사/인구비례표
(Progressive Architecture 9309)

인구백만인당 건축사수				
나 라		인구(백만)	건축사수	인구백만인당 건축사수
네덜란드	Netherlands	14.7	2,000	136
우크라이나	Ukraine	53.0	9,000	170
에스토니아	Estonia	1.6	350	219
리투아니아	Lithuania	3.8	900	236
라트비아	Latvia	2.8	800	285
포르투갈	Portugal	10.1	3,000	297
일본	Japan	123.0	740,000	166
미국	U.S.A.	250.0	85,000	340
아일랜드	Ireland	3.5	1,200	343
스페인	Spain	39.0	16,000	410
프랑스	France	55.6	24,200	435
룩셈부르크	Luxembourg	0.4	200	500
영국	U.K.	55.0	27,600	502
벨기에	Belgium	9.9	6,300	636
이탈리아	Italy	57.3	38,000	663
덴마크	Denamark	5.1	5,000	980
독일	Germany	62.0	67,000	1,080
그리스	Greece	9.9	11,700	1,182

술조직과 협동하여야 한다.

직원의 수가 5~9인 정도가 되는 사무실이면 소장격의 건축가가 2명 혹은 그 이상 있을 수 있으며 (partnership) 그 중 경험이 많은 건축가(디자이너)가 비영업관계의 업무와 개척업무나 기본설계, 이와 관련된 각종 회의, 통신, 출장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너는 구조, 설비, 실시설계의 작성, 시방서작성, 공사감리 등의 책임을 맡아 분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데 소장격의 디자이너, 엔지니어와 원만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공도의 검토까지 맡는다. 이 정도의 조직이라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기본설계 까지만 수행한 후, 실시설계를 맡아서 제작할 별도의 조직과 협동도 가능하다.

나. 중규모 사무소

직원의 수가 10~30인 정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책임건축가가 적당하며, 디자이너와 실시설계를 맡을 드래프트맨도 상급, 중급, 수련급의 3단계로 나누고 가능하면 일반도, 상세도, 구조도 등 전문분야별로 분화할 필요도 생긴다.

이런 시스템은 생산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이므로 중간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무실에 적합하지만, 직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다. 대규모 사무소

30인 이상의 사무소가 되면 전문기술자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표급인 건축가들은 주로 경영에 주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는 경영자로서의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적당하지 않을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다른 전문경영인이 이 일을 맡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협력자와 일을 한다 하여도 건축가라는 직업인으로서 개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무소의 파트너들은 프로젝트별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데 각 담당 별로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반업무 등 여러 명으로 한 팀을 이루고 시방서, 견적, 구조, 설비기술자 등과는 필요에 따라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소장격의 파트너는 구조나 설계, 감리업무와 같은 전문분야를 맡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중규모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실시설계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시방서 작성 전문가도 필요하다.

40인 이상의 규모가 되면 성격에 따라 횡적(horizontal), 종적(vertical)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횡적인 방식에서는 기획, 설계, 구조, 설비, 실시설계, 시공감리 등이 부문에 따라 동시에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하여 종적방식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담당자를 주축으로 그룹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어 독립된 사무실이 여러 집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